

제 17 장 환경

제 17.1 조 배경과 목적

1. 양 당사국은 「1992 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의제 21」 및 「2002 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을 상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자국의 약속을 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경제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협력의 혜택을 강조한다.
3. 양 당사국은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환경 법을 규정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식한다.

제 17.2 조 규제 권리와 보호 수준

각 당사국이 자국의 환경 보호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관련 법과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과 정책이 높은 환경 보호 수준을 규정하고 장려하며, 관련이 있는 경우, 제17.3조에 언급된 협정에 합치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러한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7.3 조 다자간 환경 협정

1. 양 당사국은 세계적 또는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 및 협정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관심 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은 그들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 협정을 각각 자국의 법과 관행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

제 17.4 조 환경보호에 유익한 무역

양 당사국은 관련 비관세 장벽의 처리를 포함하여,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 17.5 조 법의 적용과 집행에서의 보호 수준 유지

1.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실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한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사, 공소, 규제 또는 준수의 사안에 대하여 그들의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함을 반영하거나 또는 보다 우선한다고 결정된 다른 환경 사안에 대한 집행에 자원을 할당하도록 하는 선의의 결정의 결과일 경우, 당사국이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하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 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고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외하지 아니한다.

제 17.6 조 과학적 정보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보호 목적의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때, 과학 기술 정보와 관련 국제 기준, 지침 또는 권고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제 17.7 조 구제 및 절차적 보장에 대한 접근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국의 환경법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당국이 자국 영역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제기된 환경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할 것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 집행을 위한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자국법에 따라 이용가능하고, 공정·공평·투명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절차에서의 공청회는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법집행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 공개된다.
3. 각 당사국은 특정 사안에서 자국법에 따라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자가 그 당사국의 환경법 집행을 위하여 제2항에 언급된 절차와 그 범위반에 대

한 구제를 요청함에 있어서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절차에서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가급적이면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기술하며 적기에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5.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와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제2항에 언급된 절차의 당사자가 그러한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적법 절차에 따른 재심과 정당한 경우 정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6. 제19.3조(행정절차) 및 제19.4조(재심 및 불복청구)는 이 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7.8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된 자국의 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법에 대하여서 다른 쪽 당사국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표하거나 미리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제19.1조(공표)는 이 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7.9 조

정보 공개

1. 각 당사국은 대중에게 환경법 관련 정보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자국의 환경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촉진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자국 영토 내에 거주 또는 설립된 인의 문의를 접수하고 고려함을 규정한다.

제 17.10 조

협력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문제의 무역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상호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협력 활동의 개발 및 이행에 대중 및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환경협의회는 협력분야를 결정하고, 협력 이행을 감시한다.

제 17.11 조 제도적 장치

1. 각 당사국은 이 장을 이행할 목적으로 접촉선 역할을 하는 공무원을 자국 정부 내에 지정한다.
2. 양 당사국은 환경협의회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각 당사국 정부의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고위 대표자로 구성된다.
3. 협의회는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며, 적절한 경우, 이 장에 따른 진전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정의 발효 시점부터 1 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

제 17.12 조 정부간 협의

1. 양 당사국은 대화, 협의 및 협력을 통하여 이 장의 해석과 적용에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¹ 요청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적시하고, 제기된 문제의 충분한 조사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협의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시작된다.
3.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4. 한쪽 당사국이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협의회가 그 사안의 검토를 위하여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신속하게 소집되고 그 사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협의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회는 해결책은 공개된다.
5.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고위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협의는 협의를 요청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된다.

¹ 제17.5조제1항의 협의는 무역 또는 투자 효과가 성립될 수 있는 실질 내용을 가진 그러한 사안에 제한된다.

제 17.13 조 전문가 패널²

1. 사안이 제17.12조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제17.12조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전달된 120일 후 그 사안의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가 패널에 대한 위임사항은 “환경 장의 관련조항에 비추어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서에 언급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사안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³ 패널위원 선정에 대하여는 부속서 17-가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한다.
2. 최종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이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결정할 경우,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호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보고서의 권고 이행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권고에 대한 양 당사국간 합의 결과는 신속하게 공개된다. 전문가 패널의 권고에 대한 이행은 협의회에 의하여 점검된다.
3.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부속서 21-나(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 그리고 부속서 21-다(모범 절차 규칙)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 17.14 조 정보 보호

이 장은 당사국에게 정보에의 접근과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달리 공개가 금지되거나 면제될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7.15 조 분쟁해결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당사국은 제 21 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17.16 조 캐나다 주에의 적용

제 1.4 조(의무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주에 대한 이 장의 적용은 부속서 17-나에 따른다.

² 전문가 패널을 요청하기 전에, 당사국은 패널 검토의 대상이 될 환경법과 그 범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등한 환경법을 자국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고서는 권고만을 포함하고 무역제재나 벌칙금과 같은 구제의 사안을 다루지 아니한다.

제 17.17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환경법이란 다음을 통하여 환경보호 또는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법령 또는 규제 규정, 또는 그 밖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말한다.

- 가. 오염원 또는 환경오염물질의 방출·방류 또는 배출의 방지·저감 또는 통제
- 나.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와 그와 관련된 정보의 전파, 또는
- 다.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야생 식물 또는 동물, 그 서식지 그리고 보호되는 자연 지역의 보전 및 보호

그러나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천연자원에 대한 상업적 채취나 개발, 또는 자급자족이나 원주민의 수확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7-가
전문가 패널과 관련된 절차

1. 패널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 가. 전문가 패널은 3 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 나. 전문가 패널을 설치하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 각 당사국은 1 명의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그리고
 - 다. 한쪽 당사국이 그 기간 내에 자국의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추가 7 일 이내에 자국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한 당사국의 국민으로 자격을 갖춘 개인 중에서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2. 의장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 가.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을 한 당사국에게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니면서 의장이 될 자격을 갖춘 3 명의 후보 이름을 제공한다. 그 명단은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시부터 30 일 이내에 제공된다.
 - 나. 요청 당사국은 그 명단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정할 수 있고, 명단이 제공되지 아니하였거나 후보자 중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요청을 받은 당사국에게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면서 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3명의 이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명단은 가호에 따른 명단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또는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 후 37일 이내에 제공된다. 그리고
 - 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나호에 따른 명단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3명의 후보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실패할 경우, 의장은 가호와 나호에 따라 양 당사국이 제안한 후보 중에서 추가 7일 이내에 추첨으로 선정된다.
3. 패널위원으로 추천된 전문가들은 환경법 또는 이 장에서 다루는 사안 및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어야 한다.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진행중인 사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어느 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정부와도 연계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가 패널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되는 부속서 21-나(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와 부속서 21-다(모범 절차 규칙)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각 당사국은 전문가 패널에 서면 및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진다.
- 나. 양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관련 정보나 전문성이 있는 비정부기구, 기관 및 개인은 전문가 패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진다. 그리고
- 다. 각각의 패널 절차에 있어서, 전문가 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가 개최되고, 심리는 정보에의 접근과 사생활의 보호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대중에 공개된다.

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가 패널은 마지막 전문가가 선정된 후 1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게 사실의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가 패널이 내린 모든 결정을 명시하고, 사안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당사국은 중간보고서 제출 후 45일 이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 패널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검토한 후, 전문가 패널은 그 보고서를 재검토하거나, 적절한 경우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가 패널은 중간보고서 제출시부터 60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당사국은 최종보고서 제출시부터 30일 이내에 그 최종보고서를 공개한다.

부속서 17-나
캐나다 주에의 적용

1. 이 협정의 발효 후, 캐나다는 주의 관할 영역 내에서의 사안과 관련하여 캐나다가 구속되는 주를 명시한 서면 선언문을 외교 채널을 통하여 한국에 제공한다. 그 선언문은 한국이 수령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캐나다는 이 장이 가능한 한 많은 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캐나다는 자국 선언문에 대한 수정 6개월 이전에 이를 한국에 통보한다.
4. 캐나다는 위에 언급된 선언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7.12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